

수입박제품 검역방법(제34조 관련)

1. 용어정의: 박제작업을 완료한 박제품

- 박제에 사용되는 가죽, 뼈, 발굽 등의 재료를 탈지, 세척, 건조, 방부 등 처리하여, 동물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형태로 모형틀에 가죽을 덮어 동물의 원래 모습을 재현한 상태를 말한다.

2. 검역방법

- 박물관, 연구소 등 전시용 박제품: 서류검사 후 개방
 - 수출자 또는 제조사가 박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박물관, 연구소 등에서 전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박제작업을 완료한 박제품: 관능검사
 - 오물, 혈액, 해충, 부패취 등 이상여부 확인될 경우 구내창고 입고 후 소독 실시
- 박제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: 동물의 사체에 준하여 처리

3. 소독방법

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(소독 실시 기준) 준용